

문서번호	지적과-5717
결재일자	2016.3.31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★주무관	지적행정담당	지적과장	행정국장		
김성대	김태수	권상태	전결 03/31 손정수		
협 조					
		주무관	우경신		

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등록사항 일제정비



행 정 국
지 적 과

중개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!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일제정비 계획

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해당 여부 및 등록사항을 조사하고 정비함으로서 중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.

I 추진근거

- 「공인중개사법」 제10조, 제38조, 제39조
- 2016년 서울시 지적·토지업무 운영지침
-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II 추진개요

- 정비기간 : 2016.04.01. ~ 10.31.
- 정비대상 : 개업공인중개사, 소속공인중개사, 중개보조원
- 정비인원 :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1,104명
- 부동산중개업소 등록현황 (2016.03.31. 기준)

계	공인중개사	중개인	법인
799	710	87	2

-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등록 현황 (2016.03.31. 기준)

계	소속공인중개사	중개보조원	비고
305	49	256	부동산중개업 종사자

Ⅲ

세부추진계획

- 준비기간 : 2016.04.01. ~ 10.31.
- 추진계획
 - 2016.04.01. ~ 05.31. : 대상자 발체 및 조서작성
 - 2016.06.01. ~ 07.31. : 등록기준지 조회
 - 2016.08.01. ~ 09.30. : 시,군,구 신원조회 의뢰
 - 2016.10.01. ~ 10.31. : 결격사유 대상자 조치 및 결과보고
- 결과조치
 -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등록취소
 - 중개보조원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소속공인중개사로 변경등록 토록 1차 권고, 2차 조치.
 -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종사자 신고하도록 1차 권고, 2차 조치.

Ⅳ

기대효과

-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중개사고 사전예방.
- 주민의 재산권 보호.

Ⅳ

행정사항

-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부 등록기준지 조회 협조.